

● 제303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
제4차 운영위원회

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토보고서

2021. 12. 21.

운영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[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제안자 : 김경 의원 1인발의(찬성자 김인제 의원 외 23명)
나. 제안일 : 2021. 10. 15.
다. 회부일 : 2021. 10. 20.
라. 의안번호 : 2808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중앙행정기관, 지자체 및 교육청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·폭행 등의 피해 사례는 4만 6,079건으로, 2019년 3만8,054건 대비 7,575건(19.7%)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- 이처럼 민원 응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폭언 및 인격 모독에 상시 노출되어 있고,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.
- 이에 민원인과의 통화 이전에 사전 녹음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고, 녹음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민원상담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민원인을 응대하는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한편 민원 응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민원상담 내용의 녹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(안 제5조의2 신설).

3. 참고사항

- 가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.
- 나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선희)

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

- 본 개정안은 민원인과의 음성통화 시 통화내용의 녹음을 사전에 알린 후 녹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, 민원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 및 인격모독성 발언과 그에 따른 분쟁 등을 예방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민원응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제안되었음.

2 민원상담 통화내용 녹음에 대한 근거 마련(안 제5조의2 신설)

- 「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」는 시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신속·정확히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권익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'18년 7월 19일 제정되었음.
- 이 조례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은 시민권익담당관이 처리하고 있으며,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접수·처리된 민원은 <표-1>에 나타난 바와 같이 '20년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계속 늘어나고 있음.

<표-1>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민원 처리 실적

구 분	2018년 (7.1.~12.31.)	2019년 (1.1.~12.31.)	2020년 (1.1.~12.31.)	2021년 (1.1.~11.30.)
건 수	284건	467건	805건	1,153건

- '21년 기준 월평균 105건의 민원 접수 가운데 전화상담은 대략 20~25%를 차지하며 이 중 일부 민원인의 폭언 및 인격모독성 발언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이 정신적 피해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, 이는 민원상담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.

- 전국 단위에서도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·폭행 등의 위법행위가 증대되고 있으며(<표-2>, <표-3> 참조),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‘행정 기관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확대방안’을 마련해 ’21년 7월부터 전 행정기관(중앙부처·지방자치단체·교육청)에 시행하고 있음.¹⁾

<표-2> 전화민원 응대시 민원인의 폭언 등 현황

연도	계	폭언·욕설	협박	성희롱
2019년	17,952건	16,240건	1,580건	132건
2020년	25,296건	21,458건	3,641건	197건

<표-3> 민원인의 위법행위 현황(전화·방문민원 포함)

연도	계	폭언·욕설	협박	폭행	성희롱	기물파손	기타*
2018년	34,484건	27,300건	2,924건	486건	476건	45건	3,253건
2019년	38,054건	32,312건	2,353건	323건	216건	32건	2,818건
2020년	46,079건	34,878건	5,868건	116건	381건	86건	4,750건

- 한편 타 시도 민원 관련 법규의 경우 민원응대 공무원 피해 방지와 민원 상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녹음 규정을 둔 사례는 없으나, 일부 시도에서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권익보호 조항을 통해 신체적·정신적 피해의 예방·치유를 위한 교육,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휴식시간 확보 및 휴게시설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(<붙임 1> 참조).
- 본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민원 접수·처리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례에서 나타나는 민원인의 폭언 및 인격모독성 발언을 방지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상담 서비스의 질을 높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됨.

1) 행정안전부 보도자료, “행정기관 민원담당 직원에게 폭언하지 말아주세요. 행안부, 7월부터 민원응대직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확대운영”(2021-06-23).

- 다만, 민원담당 공무원의 권익보호와 민원상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민원상담 통화 내용의 녹음 외에, 「서울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및 타 시도 민원 관련 조례에 규정된 바와 같이, 민원업무에 따른 피해의 예방·치료 교육, 휴게시간 확보 및 휴게시설 설치 등도 함께 규정하거나, 서울특별시 공무원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인천시와 같이 별도의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- 또한 현재 시의회사무처 전화기의 통화녹음 기능은 “지금부터 이 전화는 발신번호와 함께 통화 내용이 녹음됩니다”는 단순 안내문구만 제공되고 있으므로, 본 개정안의 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“민원응대 공무원의 인권보호와 민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녹음한다”는 내용으로 안내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.

3 종합 의견

- 본 개정안은 시의회가 접수·처리하는 민원업무의 전화상담에 대해 통화 녹음의 사전 안내와 녹음을 규정함으로써 민원담당 공무원의 권리보호와 민원상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, 민원업무의 증대 속에 민원인의 폭언 및 인격모독성 발언에 따른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필요하며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민원담당 공무원의 권리보호와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녹음 외에 민원업무 관련 피해에 대한 치료·예방 교육, 민원담당 공무원의 휴게시간 및 휴게시설 확보를 함께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불임 1 17개 시·도의 민원 관련 법규 현황 [2021. 12월 기준]

연번	시·도	민원 관련 법규
1	서울	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 (보호조항 없음) 서울특별시 전자민원창구 운영 규정 (보호조항 없음)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, 제7조(상담원의 권리보호 조치)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실 운영 규정, 제6조(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)
2	부산	부산광역시교육청 고충민원 옴부즈만 운영 규정 (보호조항 없음)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시행 규정 (보호조항 없음)
3	대구	대구광역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(보호조항 없음) 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(보호조항 없음) 대구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규정 (보호조항 없음)
4	인천	인천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(녹음조항 없음)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(보호조항 없음)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규정 (보호조항 없음)
5	광주	광주광역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(보호조항 없음) 광주광역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(보호조항 없음)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원봉사실 운영 규정 (보호조항 없음)
6	대전	대전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규정 (보호조항 없음)
7	울산	울산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(보호조항 없음)
8	세종	관련 조례 없음
9	경기	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, 제6조(상담원의 권리보호 조치)
10	강원	강원도교육청 민원 처리 규정 (보호조항 없음)
11	충북	충청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규정 (보호조항 없음)
12	충남	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 · 운영에 관한 조례 (보호조항 없음)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 ·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(보호조항 없음) 충청남도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(보호조항 없음) 충청남도 민원처리 규칙 (보호조항 없음) 충청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규정 (보호조항 없음)
13	전북	전라북도 전자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(보호조항 없음) 전라북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(보호조항 없음)
14	전남	전라남도 민원 처리에 관한 규칙, 제5조(담당자의 보호) 전라남도교육청 민원봉사실 운영 규정 (보호조항 없음)
15	경북	경상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(보호조항 없음)
16	경남	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, 제7조(상담사 인권 보호) 경상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규정 (보호조항 없음)
17	제주	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 처리 규정 (보호조항 없음)